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31 호
의결년월일	2005. 9. . (제 18 회)

제출일자	2005. 8. .
제출자	계 룡 시 장

1. 개정이유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내용 변경 및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12조 별표2중 시설물 2, 3, 4, 5번 항목과 설치기준 4, 5번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현행과 같음)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현행과 같음)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

시 설 물	설 치 기 준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시설면적 90㎡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이상

3.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19조3항 및 영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2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 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시설면적 90㎡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이상
6. 골프장·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2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시설물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 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u>업무시설</u> ,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생략)	2. ----- ----- ----- ----- ----- ----- <u>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u> ----- -----	(현행과 같음)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생략)	3. ----- ----- <u>제3호</u> ----- ----- -----	(현행과 같음)
4. <u>단독주택, 다세대주택</u>	<u>시설면적 120㎡초과 18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8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8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u>	4. <u>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 한다)</u>	<u>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u>
5. <u>공동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제외 한다)</u>	<u>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세대당 0.5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인 경우 세대당 0.7대, 전용면적 85㎡초과하는 경우는 세대 당 1대</u>	5. <u>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u>	<u>시설면적 90㎡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이상</u>

관 련 법 령(발 취)

-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및 영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⑧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승계한다. <신설 2000.1.28>

⑨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28>

⑩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⑪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⑫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전문개정 1990.4.7]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4.2.9>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 1996.6.4>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4.2.9>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 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